

##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0년 10월 29일(금) 15:00~17:00
- 장소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주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KAB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 10. 29(금) 15:00~17:00
-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주최 : 한국방송학회

참 석 자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 김유정(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li> <li>■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규칙 개선 방안 : 내용 및 편성영역 - 발제 : 해주용(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li> <li>■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 운영영역 - 발제 : 권호영(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li> <li>■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명현(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li> <li>-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방송평가지원단)</li> <li>- 노진백(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방송평가지원단)</li> <li>- 윤성옥(한국방송협회)</li> <li>- 성기현(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li> <li>- 강혜란(여성민우회 소장)</li> </ul> </li> </ul>	15:00~
폐 회	17:00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규칙 개선 방안

권호영(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하주용(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현행 방송법 제31조 및 제17조 3항 1호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시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방송평가는 궁극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방송 운용 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평가결과가 재허가시 활용되는 행정적 평가의 일환이므로 평가항목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즉, 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 동안의 방송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재허가 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방송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강남준 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평가항목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방송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종합하고, 그에 따라 방송평가항목을 재검토하여, 매체별, 영역별 평가항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기존 방송평가규칙에 제시된 평가항목 중 학계, 방송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매체별, 영역별 평가항목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방송평가제도의 도입과 변화

### 1) 방송평가제 도입 배경

- 방송사의 수적 증가: SBS 개국('91년), 케이블TV('95년), 위성방송('01년)
- 시청률 경쟁 심화: 채널채널의 수적 증가로 인한 시청률 경쟁 심화

-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증가로 심의제재 건수 증가
- 형식적 재허가 심의 제재결과 미반영 → 재허가와 연계된 방송평가의 필요성 제기
- ⇒ 방송평가제 법제화 : 2000년 통합 방송법 제31조

## 2) 방송평가 제도 도입 논의

- '90년에 방송평가제 도입에 대한 최초 논의 시작, 2000년 방송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
- 방송제도 연구위원회('90)
-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94)
- 선진방송발전정책연구위원회('94)
- 방송개혁위원회('99)

〈표〉 방송평가제 도입 경과

보고서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월)	방송평가제 관련 주요 내용	비고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	방송위원회 (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심의의 실효성을 위해 방송 허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li> <li>○ 허가기간 중의 내용심의 결과를 재허가에 반영토록 권고</li> </ul>	○ 방송평가제 도입에 대한 최초 논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	방송위원회 (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결과를 허가, 재허가시 반영하고,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li> </ul>	○ 허가, 재허가 및 방송평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거론
선진방송발전정책연구 보고서	공보처 (9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권의 중심의 방송평가제도 정착에 대한 내용으로 시청자 감시활동 및 시청자 의견수렴 기능의 제도화와 방송사업 활동평가 및 방송심의 결과를 허가 및 재허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li> </ul>	○ 운영평가와 내용평가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가임을 분명히 함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 재허가가 형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지적, 방송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을 포함하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방송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과 제재를 행할 것을 제안</li> </ul>	○ 개선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안) 제출

## 3) 방송평가 제도 도입

-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방송평가규칙을 제정하여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 전반에 대해 평가
- 근거조항: 방송법 17조(재허가 등) 및 31조(방송평가위원회)
- 2001년부터 지상파방송(TV/R)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
- '02년 SO 및 PP(보도 및 홈쇼핑)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

- '03년부터 허가 및 승인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승인PP)에 대해 매년 방송평가 실시

□ 방송평가의 목적

- 방송평가는 방송법(17조3항)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을 목적으로 실시
-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임 제고
  - '08년부터 방송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함에 따라, 방송평가 결과가 방송사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사의 공적 책임 확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 평가결과의 활용

- 방송평가 결과를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 : 2001년 지상파(TV/R)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있음(40~50%)

4) 방송평가 규칙 개정 경과

- 2000년 방송평가규칙 제정 이후 KI 수용자 평가 등 새로운 측정항목 도입을 위해 3차례 개정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제1차 개정	2002. 10. 31	○ 규칙 제15조의 종합평가결과 구분 비율 조정
제2차 개정	2005. 12. 9	○ 수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내용평가(KI수용자평가조사) 도입 ○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평가 도입 ○ '방송사업자 운영평가단'에 의한 운영영역 평가 도입
제3차 개정	2007. 12. 28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평가항목 및 척도 신설 ○ 지상파DMB사업자 및 위성DMB사업자 2008년 방송평가 유예(부칙 신설)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항목의 평가척도 개정 (주의, 경고 감점 신설)

- 평가규칙 제정('00. 8. 13): 매체별 평가, 영역별 평가, 종합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1차 개정('02.10.31): 종합평가결과의 구분을 삭제하고, 평가등급 구간을 일정하게 조정 (5, 7, 9등급을 9등급으로 통일)
- 2차 개정('05.12.09): 시청자에 의한 프로그램 내용평가(KI)를 도입하고, 전문가 집단(운영평가단)에 의한 운영영역 평가 실시
- 3차 개정('07.12.28): 지상파 및 위성 DMB에 대한 평가항목 마련

## 5) 방송평가 방법

### (1)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 매체별 평가: 매체별로 평가배점과 평가항목을 차별화
  - 허가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TV/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DMB(지상파/위성)사업자
  -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홈쇼핑PP)
- 방송평가 대상기간 : 매년 1. 1. ~ 12. 31.  
(부득이한 경우, 평가 가능한 특정시기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영역별 평가: 내용, 편성, 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방송법 제31조)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평가영역)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운영일반 및 경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 종합평가 : 영역별 평가의 종합

〈표〉 매체별 영역별 배점(현행)

평가대상 매체 \ 방송평가 영역	내용	편성	운영	총점
지상파방송사업자(TV)	300	300	300	900
지상파방송사업자(R)	250		250	500
SO · 위성방송사업자	200		300	500
PP(보도분야)	250		250	500
PP(홈쇼핑분야)	250		250	500
지상파DMB	250		250	500
위성DMB	200		300	500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및 『영역별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 (2) 방송평가 항목별 평가척도

- 현행 평가항목의 구성
  - 내용 영역의 주요 평가 항목: 프로그램의 품질,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자체심의 및

시청자 불만 처리 운영 실적 등

- 편성 영역의 주요 평가 항목: 법정 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 어린이, 장애인, 재난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등, 지역성구현(SO), 공익성 프로그램(홈쇼핑) 등
- 운영영역의 주요 평가 항목: 경영적정성,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및 기술투자, 방송법 등 관계법률 준수 여부 등

〈표〉 평가항목별 배점(현행)

평가 영역	평가항목	배 점								
		지상 파TV	지상 파R	SO· / 위성	보도 PP	홈쇼 핑	DMB			
							지상 파TV	지상 파 R	위성	
내용 영역	프로그램 질 평가	70								
	프로그램 관련 수상 실적	30	30	10			20	20	20	
	자체심의 운영실적	30	50	10	50	50	30	30	20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30	30	50	20	50	30	30	50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20			40					
	시청자 위원회	20			40		20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100	90	60	60	120	70	90	50	
편성 영역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60								
	지역방송사 자체 제작비율	60								
	외주프로그램 편성	3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30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60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편성	60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60	50		40	10	40	40	20	
	직접제작·외주프로그램 편성			30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			40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20				
	DMB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40	40	40	
	운영 영역	경영의 적정성	40	40		40				
		재무의 건전성	40	40	30	40		30	30	30
사회사 평가결과 활용 적정성		30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30	30	30	40	30	30	30	
방송기술 투자		30	30	30	30	40	40	40	40	
공정거래 준수		30	10	40	10	30	30	30	30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30	30	30	30	30	40	40	30	
장애인 고용		20	20	15	20	20	20	20	15	
여성 고용		20	20	15	20	20	20	20	15	
경영투명성 확보 시스템 운영		30	30	40	30	40	40	40	40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40					40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30					30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30				

(1) 내용영역의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표〉 내용평가 영역의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현행)

평가항목	평가척도	TV	R	SO•위성	PP		DMB	
					보도	홈쇼핑	지상파	위성
		<b>300</b>	<b>200</b>	<b>130</b>	<b>210</b>	<b>220</b>	<b>170</b>	<b>140</b>
프로그램 질 평가	▶ 수용자 평가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질 평가 ※ 자체편성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70	-	-	-	-	-	-
프로그램관련 수상실적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30	30	10	-	-	20	20
자체심의 운영실적	총 점	30	50	10	50	50	30	2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6	15	2	8	12.5	6	9
	▶大本심의 및 제작물 심의비율	6	-	2	8	-	6	-
	▶ 심의시기	6	-	2	8	12.5	6	-
	▶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6	15	2	8	12.5	6	9
	▶ 월평균 1인당 심의 건	6	20	2	8	12.5	6	12
	▶ 공정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여부	-	-	-	10	-	-	-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총 점	30	30	50	20	50	30	50
	▶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15	15	25	10	20	15	-
	▶ 방송사의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부서 운영 -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야간 및 주말 민원접수 시스템구축	3.75 3.75	3.75 3.75	6.25 6.25	2.5 2.5	5 5	3.75 3.75	6.25 6.25
	▶ 접수된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의 효율성 정도 - 시청자 불만처리율 - 시청자 피드백 시스템	3.75 3.75	3.75 3.75	6.25 6.25	2.5 2.5	5 5	3.75 3.75	6.25 6.25
	▶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	-	-	-	10	-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총 점	20	-	-	40	-	-	-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10	-	-	20	-	-	-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10	-	-	20	-	-	-
시청자 위원회	총 점	20	-	-	40	-	20(TV)	-
	▶ 추천단체의 적절성	5	-	-	10	-	5	-
	▶ 정족수 유지 여부	2.5	-	-	5	-	2.5	-
	▶ 회의록 공개 여부	5	-	-	10	-	5	-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	2.5	-	-	5	-	2.5	-
	▶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2.5	-	-	5	-	2.5	-
	▶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여부	2.5	-	-	5	-	2.5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 주의, 경고, 사과, 정계, 시청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 ※ 수중계프로그램: 50%감	100	90	60	60	120	70/90 (T/R)	50

(2) 편성영역의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표〉 편성평가 영역의 항목별 평가 척도(현행)

평가항목	평가척도	TV	R	SO·위성	PP		DMB	
					보도	홈쇼핑	지상파	위성
		<b>300</b>	<b>50</b>	<b>70</b>	<b>40</b>	<b>30</b>	<b>80</b>	<b>60</b>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오락편성비율: 60%미만 만점, 9등급평가 ※ 평가대상: 자체편성50%이상인 종합편성방송사업자	60	-	-	-	-	-	-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법정비율 기준: 9등급 평가 ※ 평가대상: KBS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자체편성 50%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제외)	60	-	-	-	-	-	-
외주 제작프로그램 편성	총 점	30	-	-	-	-	-	-
	▶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	10	-	-	-	-	-	-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준수 여부	10	-	-	-	-	-	-
	▶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	10	-	-	-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총 점	30	-	-	-	-	-	-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대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법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	10	-	-	-	-	-	-
	▶전체 방송시간 대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법정 신규 편성 비율 준수 여부	20	-	-	-	-	-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총 점	60	-	-	-	-	-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 (8%만점, 9등급)	30	-	-	-	-	-	-
	▶전체방송시간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4%만점, 9등급)	30	-	-	-	-	-	-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총 점	60	-	-	-	-	-	-
	▶자막방송편성비율: 50%만점, 9등급	24	-	-	-	-	-	-
	▶수화방송 편성비율: 5%만점, 9등급	24	-	-	-	-	-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5%만점, 9등급	12	-	-	-	-	-	-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총 점	60	50	-	40	10	40	20
	▶재난방송 편성 실적: 5등급 평가	20	20	-	10	5	10	5
	▶재난피해 사전예방 프로그램 편성 실적: 5등급 평가	20	10	-	10	-	10	5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	5	5	-	5	5	5	2.5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여부	5	5	-	5	-	5	2.5
	▶재난방송 대응시스템 구축 여부	5	5	-	5	-	5	2.5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 5등급 평가	5	5	-	5	-	5	2.5
직접제작/외주제 작 프로그램 편성	총 점	-	-	30	-	-	-	-
	▶직접제작/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실적: 5등급 평가	-	-	15	30	-	-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및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 편성비율: 5등급 평가 - 액세스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	-	10 5	- -	-	-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편성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9등급 평가 ※ 평가대상: SO	-	-	40	-	-	-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총 점	-	-	-	-	20	-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실적: 5등급	-	-	-	-	10	-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5등급	-	-	-	-	10	-	-
DMB방송용 프로그램편성	▶DMB방송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프로그램 편성현황 평가	-	-	-	-	-	40	40

(3) 운영영역의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표〉 운영평가 영역의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현행)

평가항목	평가척도	TV	R	SO•위 성	PP		DMB	
					보도	홈쇼핑	지상파	위성
		300	250	300	250	250	250	300
경영의 적정성	총 점	40	40	-	40	-	-	-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여부	20	20	-	20	-	-	-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 하는지 여부	15	15	-	15	-	-	-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5	5	-	5	-	-	-
재무의 건전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등을 평가	40	40	30	40	-	30	30
인적자원개발 투자	총 점	30	30	30	30	40	30	30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10	10	10	10	13	10	10
	▶1인당 교육비	10	10	10	10	13	10	10
	▶직무와 연관있는 교육에 대한 평가	10	10	10	10	13	10	10
방송기술 투자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30	30	30	30	40	40	40
공정거래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평가 - 행정지도,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30	10	40	10	30	30	30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법령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형벌	30	30	30	30	30	40	30
장애인 고용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 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고용시 만점 부여	20	20	15	20	20	20	15
여성 고용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 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20	20	15	20	20	20	15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총 점	30	30	40	30	40	40	40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20	16	15	16	15	27	27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5	7	5	7	5	6.5	6.5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5	7	5	7	5	6.5	6.5
	▶사외이사 운영 현황	-	-	5	-	5	-	-
	▶소액주주 보호장치	-	-	5	-	5	-	-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	-	5	-	5	-	-
자회사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	총 점	30	-	-	-	-	-	-
	▶자회사 평가지표의 합리성	10	-	-	-	-	-	-
	▶자회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10	-	-	-	-	-	-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10	-	-	-	-	-	-
수신료배분의 적정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요금 약관' 승인시 제출된 수신료 배분 기준 준수 여부 평가	-	-	40	-	-	-	40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객관적 선정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	-	30	-	-	-	30
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	-	-	-	30	-	-

### 3) 방송평가 실시 결과(지상파TV)

채널명	2009년 평가	2008년 평가	2007년 평가	2006년 평가	2005년 평가	2004년 평가	2003년 평가	2002년 평가	2001년 평가
	(2008년 실적)	(2007년 실적)	(2006년 실적)	(2005년 실적)	(2004년 실적)	(2003년 실적)	(2002년 실적)	(2001년 실적)	(2000년 실적)
KBS1 TV	84.42	84.87	83.48	81.1	83.83	85.83	83.47	(SO와 PP에 대해서 만 평가 실시)	80.9
KBS2 TV	81.35	78.93	73.79	74.67	77.71	78.02	77.17		71.2
MBC TV	78.34	73.9	70.57	78.39	81.06	76.41	81.1		76.27
SBS TV	82.35	79.2	75.98	81.13	78.57	85.34	81.97		66.62
EBS	86.04	82.76	84.3	84.83	87.54	82.23	87.45		80.14
평 균	82.5	79.93	77.62	80.02	81.74	81.57	82.23		75.03

## III. 방송평가제도 개선 추진 배경

### 1. 방송환경의 변화 반영 필요

#### 1) 신규 매체의 등장과 방송시장 경쟁 강화

##### (1) 방송환경의 변화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방송법상 제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새로운 방송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평가제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방송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송평가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지상파만이 있거나 케이블TV이 초기였음.
  - 지상파 방송사만 존재하던 시기에 방송평가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방송제도 연구위원회('90),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94), 선진방송발전정책연구위원회('94)
  - 방송평가제를 통합 방송법에 도입한 1999년에는 케이블TV의 위상이 매우 낮았음: 방송 개혁위원회('99)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방송평가는 다분히 지상파방송사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임.
- 방송평가제를 실시한 2000년 이후 유료 매체 이용자수의 급격한 증가
  - 유료매체 이용자가 1999년이 792만(이중 82%는 중계유선가입자)에서 2009년에는 1,942만으로 증가

〈표〉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변화

(단위 : 만)

	1999년 12월	2009년 6월
케이블TV	140	1,513
중계유선	652	23
위성방송	-	237
IPTV	-	169
합계	792	1,942

-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PP의 증가로 인해서 지상파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함
  - 1999년의 경우 조사 자료가 없으나 6%-7% 내외로 추정됨(2001년의 경우 케이블TV 채널의 시청점유율은 9.7%였음)
  - 케이블TV 채널의 시청점유율은 2009년에 45%로 증가함
  - 케이블TV 채널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주로 지상파TV에서 초방한 드라마, 쇼·오락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면 지상파방송사의 매체력은 시청점유율 55%보다는 높음

(2) 신규매체의 등장

- DMB 사업자의 등장
  - 위성DMB는 2005년 5월에, 지상파DMB는 동년 12월에 본방송을 함
  - 지상파DMB의 경우 대부분의 채널 구성이 지상파방송사나 케이블PP의 프로그램을 수중계하고 있음
    - 지상파DMB 수신 가능 단말기는 2,500만대가 판매되었으나 이용자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음
    - 지상파DMB는 광고를 수익모델로 취하였으나 매체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아 광고 판매가 매우 저조함(2009년 연간 지상파DMB 전체 광고 판매액은 124억원으로 1사당 연간수입은 약 20억원에 불과)
    - 지상파 계열 DMB채널은 수익모델 부채로 수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립법인인 유원미디어와 한국DMB는 자본금에 가까운 누적 적자 상태임.
  - 위성DMB의 경우 가입자수는 2009년 6월에 200만을 넘어섰지만, 대규모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지상파채널의 경우 MBC만 실시간 방송되고 있고, KBS와 SBS채널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음.

□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의 도입

-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은 특정 소규모 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FM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국이다. 방송법에는 최대 출력이 10W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각 지역의 소출력 FM 방송국의 출력은 1W로, 이 정도의 출력은 활개지 지역의 경우 송신소로부터 반경 5Km, 도시 지역의 경우 약 1-2Km 정도를 가청권으로 할 수 있다.
- 현재 전국에 7개의 소출력 라디오 사업자가 있는데(분당, 관악, 마포, 광주, 영주, 성서, 공주), 모두 2004년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 시험 방송을 시행했던 방송국들이 정식 허가를 받았음.
  - 7개 사업자는 관악FM, 마포FM, FM분당, 금강FM, 성서공동체FM, 영주FM, 광주시민방송
- 소출력라디오 방송사를 방송법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부르며, 방송사업자에 포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장

- 스카이라이프가 2003년에 데이터방송을 통한 T커머스(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T커머스사업자가 등록만 하면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슈가 됨.
  - (구)방송위원회는 등록제를 고려하였으나 TV홈쇼핑사업자의 반발을 받아들여 승인제로 변경함.
- (구)방송위원회는 2004년 3월에 방송법에 데이터방송의 정의를 신설함.
  - 사업의 법적지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한 유형
  - 데이터 방송사업자는 등록해야 하지만 보도·홈쇼핑·종합편성 분야는 승인을 받도록 함
- (구)방송위원회는 2005년 3월에 비교심사방식을 통하여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T-commerce)로 10개 사업자를 승인함
  - 승인받은 10개 사업자: 기존 5개 홈쇼핑 사업자(CJ홈쇼핑, LG홈쇼핑, 우리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현대홈쇼핑) + 신규사업자 5개(아이디지털쇼핑, KT하이텔, TV벼룩시장, 하나로텔레콤, 화성산업)
- T-커머스는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의 장점을 겸비한 서비스로 강력한 소매 유통 채널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현재 T-커머스가 가능한 플랫폼으로는 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TV, IPTV가 있음
  - 이들 매체의 가입자수는 많지 않음: 위성방송 230만, 디지털케이블TV 300만, IPTV 200만
  - 위성방송은 '03년 말 상품판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서비스 시작 후 6개월만에 중단함
  - 케이블TV는 '05년부터 CJ홈쇼핑과 GS홈쇼핑이 T-커머스를 시작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이 활발한 양사의 TV홈쇼핑 매출에서 T-커머스의 비중은 '08년 기준으로 1% 수준에 불과함
    - 5대 홈쇼핑 중 일부는 T-커머스의 부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고, 화성과 벼룩시장

은 사업 철수를 고려중임

- IPTV는 '08년부터 VOD형태의 T-커머스를 제공하고 있고, '09년 8월에는 PPL과 접목된 채널연동형 실시간 T-커머스가 시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 바 있음
- T-커미스는 여전히 초기 단계 서비스로 활성화되려면 개선이 필요함
  - T-커미스가 가능한 플랫폼의 가입자수가 증가되어야 함.
  - T-커미스가 결제 등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하고, 상품이 다양해져야 함.
  - T-커머스 제공사업자 범위의 확대 및 2차 화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 IPTV 사업자의 등장

- IPTV의 도입과 법제화
  - 2004년경부터 IPTV의 도입을 두고 논쟁이 이루어짐.
  - 2007년 12월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통과되고 2008년 8월에 동 시행령이 공포됨.
  - 2008년 9월에 KT, SK텔레콤, LG데이콤을 IPTV 사업자로 선정함
- IPTV 서비스의 제공
  - IPTV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6년 7월에 하나로텔레콤(SK텔레콤)이 VOD형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7년 9월에는 KT가, 2008년 12월에는 LG데이콤이 VOD형 서비스를 시작함
  - 2008년 12월에 허가받은 3개 IPTV사는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시작함
- IPTV의 매출력
  - IPTV 가입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신회사의 마케팅 능력에 힘입어 2010년 4월에 200만을 넘어서면서 유료매체 중 가장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음
  - IPTV는 머지않은 시점에 위성방송 가입자수 230만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PTV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VOD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실시간 채널의 경우 케이블 TV에 비해서 약점이 있음

#### □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유통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인터넷망을 통해 PC로 동영상을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38세 이하의 젊은 층은 TV 프로그램을 PC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등 PC를 통한 동영상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음
- TV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2007년에 애플 TV를 발매하였으나 실패함
  - 2009년에 스마트폰의 성공을 계기로 2010년에는 스마트TV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음.
    - 스마트TV의 구체적인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정보 검색,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 동영상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념화되고 있음
    - 2010년에 삼성이 스마트TV를 발매하였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함

- 2010년 하반기에 구글TV를 발매할 예정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방송의 공적책무 부과와 차별화 여부 검토 필요

- 방송사업자별 평가 차별화 방안 또는 평가 배제 여부 검토 필요.
  - 소출력 라디오, 데이터방송, DMB, IPTV 등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방송시장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방송시장의 경쟁 심화.
- 기존 방송사업자의 뉴미디어 방송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평가 실효성 검토 필요.

2)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의 명료화와 평가항목 개발 필요

□ 방송통신 기술 발전, 낮아지는 진입장벽, 방송매체의 수적 증가, 방송시장 경쟁 강화로 방송평가 대상을 명료화할 필요가 대두됨.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평가대상)의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함.
- 현행 평가대상 사업자: 지상파방송(44개), SO(101개), 위성방송(1개), 보도·홈쇼핑 PP(7개), 지상파DMB(11개) 및 위성DMB(1개)
- 2009년부터는 지상파 및 위성 DMB에 대해서도 방송평가를 실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에 의거 2009년부터 평가 적용)
  - 수도권 지상파DMB: 6개(KBS, MBC, SBS, YTN, 한국DMB, U1미디어)
  - 지역 지상파DMB: 5개(KBS지역, 제주/광주/부산/춘천 MBC)
    - ※ 13개 지역 DMB사업자 가운데 8개는 '08년 전체 기간 동안 본방송을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2009년 방송평가에서 제외
-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지상파 및 위성 DMB, 소출력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홈쇼핑 분야, IPTV 등의 매체는 모두 허가 또는 승인 사업자이나 현행 방송평가대상에는 지상파방송(TV/R), SO, 위성방송, 승인PP로 한정(평가규칙12조).
  - 지상파 및 위성 DMB는 초기에 방송평가를 유예했다가 2009년 평가부터 포함됨.
  - 소출력 라디오 방송, 데이터방송 홈쇼핑 분야는 방송평가 대상이 아님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 IPTV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함.
  - 평가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평가대상 사업자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평가 필요
  - 허가 또는 승인 사업자라고 해도 주어진 책무가 다르며,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방송평가는 실효성이 없음.
    - 2009방송평가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평가규칙을 바탕으로 멀티이동미디어(DMB)에 대

한 방송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자체제작 및 편성되는 프로그램의 양이 전체 편성의 3% 내외에 불과하고 운영영역 역시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별도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DMB사업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멀티미디어(DMB)에 맞는 평가항목 개발이 필요함.

-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방송평가규칙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사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DMB) 등 160여개 이상의 다양한 방송사업자가 존재.
- 채널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수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걸맞은 방송평가를 통해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 품질 제고가 필요함.

## 2. 방송평가 방법론의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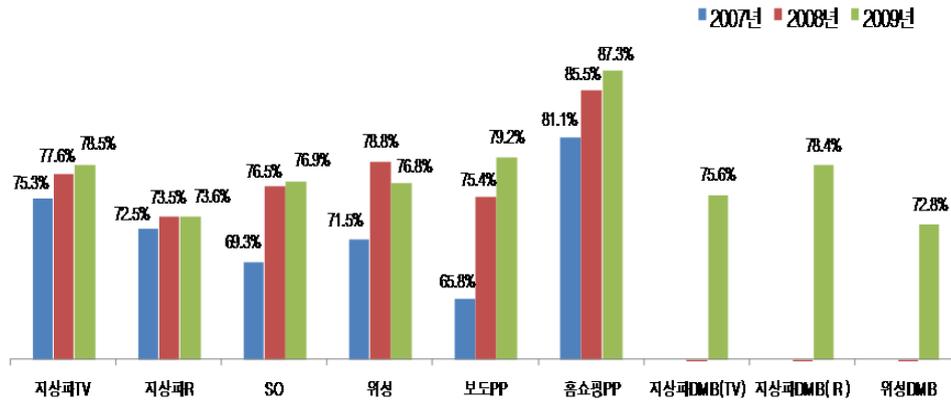
### 1) 평가 항목의 간소화를 통한 규제완화 필요성 대두

-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비판 제기
  -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됨.
  - 개별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척도가 매우 복잡
- 제출 자료의 양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는 비판 제기
  - 많은 편성 자료를 요구하는 평가항목: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 많은 경영 자료를 요구하는 평가항목: 경영의 적정성, 재무의 건정성, 자회사(계열사)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 2) 방송 평가 점수의 지속적인 향상

-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사업자가 만점을 받아 평가 실익이 없는 항목 발생

[그림 1]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상승



- 2007년부터 2009년 평가결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등의 항목은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만점(30점)을 획득.
  - 이러한 항목의 경우 평가의 의미가 퇴색하고, 평가 결과를 재허가에 반영할 경우 재허가(재승인)의 의미가 약화.
- 법규상의 기준 준수 여부만을 확인하는 평가항목은 과감히 축소하되, 전반적인 방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제도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방송사업자들 역시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규제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조정하거나 배점을 완화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음.

### 3)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균형적 배분

-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계량화되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어려워져 정성적 평가의 강화 필요성 제기
  - 계량화된 평가로 인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깊이 있는 평가가 어려움.
  - 현행 일부 평가항목에서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면 만점을 부여하는 소극적 평가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도 방송사업자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평가가 계속될수록 평가의 천정효과가 나타나게 됨.
- 현행 평가척도가 지나치게 정량평가에 의존함에 따라 일부 정성평가 도입 필요.
  - 예를 들어 운영평가의 경우 대부분 계량적 자료 중심의 단순 점수 부여 방법을 택하고 있어 방송기술투자 부분과 같은 항목에서 중장기적 투자 노력이나, 매체별 기술투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강남준외, 2008)

### 3. 방송평가제도의 타당성 제고

#### 1) 재허가/재승인 심사항목과의 중복 문제

-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편성,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송평가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의 일부 항목에서 중복 발생

〈표〉 방송평가와 재허가심사 유사 평가 항목

방송평가 항목	재허가(승인) 심사항목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시청자위원회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	방송심의 규정 위반 현황
방송법등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
지역방송 자체제작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제작의 적정성
재무의 건전성	재무구조 및 계획의 적정성

#### 2) 공/민영 방송사에 대한 평가 차별화 검토 필요

- KBS (법 제4장) 등 공영방송은 책무, 운영재원 등에서 민영방송과 차별됨에도 불구하고 공민영 방송간 평가의 차별이 없어 불평등한 평가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공영방송사의 편성과 제작방향과 민영/상업방송사의 편성이념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평가 차별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편성과 관련된 일반적 의무는 공민영간 차별적으로 부과되지 않음.
- 방송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서비스 제공의무 등은 공통적으로 평가하되,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평가척도 개선 검토.
  - 방송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차등화 된 평가를 적용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배점의 차등화를 통하여 각기 다른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KBS는 국가기간방송(법 43조), 재난방송 주관(법 75조), 수신료 징수/사용(법 66조, 68조) 의무 부과. 또한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 민족 동질성 확보 의무를 명시(법 44조):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한 평가 여부 검토.

〈표〉 공민영방송간 법적 의무 차이

항목	부과된 의무
방송사업자의 의무	현행 방송법에서는 공영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
재허가심사	재허가심사에서도 공영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
방송평가	방송평가에서 공영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음
공영방송만의 법적 의무	KBS에 대해 국가기간방송(방송법43조), 재난방송주관(방송법75조) 등 법적 의무 부과

3) 운영영역 평가의 개선 필요

- 운영부분 평가는 방송사업자의 운영이 공익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방송평가가 방송사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IV. 방송평가제도 개선의 방향

1. 방송법 체계와 방송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불분명한 조항의 개정,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한 평가 항목 조정 등 방송평가 규칙 개정의 필요성 제기
- 방송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논리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방송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평가제도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

2. 방송평가대상 명료화

1)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방송평가

- (1)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수용하여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방송평가 제도는 지상파 방송사만 존재하던 시점에 만들어진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제도화 되었음.
- 방송평가제도 도입 이후 매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유료 매체의 등장과 활성화
  - 허가(승인) 사업자중 매체력이 약하거나 적자로 고전하는 사업자 발생(예: DMB사업자)
  - 허가(승인)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짐(예: 스마트TV)
- 현재 방송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자중 평가대상인 사업자와 매체력이 비슷해진 사업자가 등장

- IPTV 이용자는 240만을 넘어섬으로써 위성방송 가입자수에 가까워지고 있음
- 스마트TV가 인기를 끌 경우 매체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2) 현재 방송 평가의 대상인 사업자중 평가의 필요성이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가 등장함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 그러나 평가대상 사업자 중에서 DMB 사업자는 평가의 실익이 없고, 홈쇼핑 데이터방송 PP의 경우 평가의 필요성이 약함.
  - 지상파계열 DMB사업자는 지상파채널을 단순 수중계 위주로 방송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의 한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 홈쇼핑 데이터방송PP의 경우 이용자가 매우 적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2) 방송평가대상 명료화의 방향

(1)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평가 대상 명료화

- 방송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를 방송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함
  -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평가대상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방송평가규칙을 통하여 평가대상을 제시.
  - 방송법 17조에서 규정한 방송평가 대상과 방송평가규칙 12조에서 규정한 방송평가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표〉 방송사업자의 법적지위와 방송평가

사업자군	인허가	방송법 조항	평가여부	법적지위
지상파방송(TV/radio)	허가	법 9조 1항	평가	방송사업자 (법2조 3호)
위성방송	허가	법 9조 1항	평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허가	법 9조 1항	평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허가	법 9조 1항	평가	
종합유선방송	허가	법 9조 2항	평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승인	법 9조 5항	평가	
중편/보도/상품판매 데이터방송채널	승인	법 9조 5항	평가배제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법 9조11항	평가배제	별도조항 (법2조 4호)
중계유선방송	허가	법 9조 2항	평가배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허가	IPTV사업법	별도의 경쟁 상황 평가	IPTV사업자

- 방송법17조(재허가 등)에서 재허가 또는 재승인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방송법17조에 의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사업자는 모두 방송 평가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 재허가 또는 재승인 사업자에 대해 방송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송평가를 편의상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자문 결과 이 조항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사업자에 대해 방송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시됨(재허가 심사시 강행규정으로 해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31조(방송평가위원회)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대상자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인지, 평가실시 여부에 대한 재량권(임의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존재.

□ 따라서 방송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의 개정이 필요함.

- 재허가 또는 재승인 대상 사업자중 방송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를 방송평가에 제외시킬 수 있으려면 방송법17조(재허가 등)를 개정하거나 방송법31조(방송평가위원회)를 개정하여야 함
  - 방송법17조 개정을 통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방송평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성을 포함시키거나
  - 방송법31조 개정 :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방송평가위원회에게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2) 방송평가 제외 고려 대상 사업자

□ 재허가 또는 재승인 대상 사업자중 방송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로는 지상파DMB,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등이 있으며, 이들을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단서조항 추가) 및 방송평가규칙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함.

### 가. DMB 사업자의 평가 제외 필요

-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경우 각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이므로 평가 대상임.
  - 이들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방송평가를 유예했으나, 2009년에 실시하는 2008년 방송평가부터 평가에 포함.

- 지상파DMB 사업자에 대한 평가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계열 DMB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는 현실적으로 DMB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상파방송에 대한 평가가 되어 평가실익이 없는 문제점 대두.
  - 지상파DMB는 이동수신기능에 초점을 맞춤.
    - 지상파계열 DMB는 독자적 프로그램 편성보다는 지상파TV 프로그램을 재전송 중이며 DMB용 프로그램 편성량은 10% 미만임.
    - 예) 재전송비율-KBS스타: 91.6%, KBS하트: 92.8%, myMBC: 89.7%, SBS: 96.4%
    - 비지상파 계열 법인이 운영하는 유원미디어, 한국DMB, YTNDMB는 주로 케이블PP의 프로그램을 구매 또는 받아서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내용영역과 편성영역의 평가가 의미가 없음.
  - 지상파계열 DMB사업자는 독립법인이 아니어서 운영평가의 의미가 없음
    - KBS, MBC, SBS의 경우 DMB사업을 지상파방송사의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DMB의 운영평가는 결국 지상파TV와 라디오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운영영역의 평가가 의미가 없음
    - 유원(U1)미디어, 한국DMB, YTNDMB 등 비지상파 법인이 운영하는 지상파DMB사업자들 역시 수익 모델이 확보되지 않아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상적인 편성과 운영이 어려움

- DMB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서 지상파 DMB 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실익이 없음
  - DMB 사업자를 평가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또다른 이유로 DMB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하며, DMB 2.0과 데이터방송 서비스 같은 DMB만의 특징적 신규 서비스 도입과 정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DMB사업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가 유의미할 정도로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평가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지상파 DMB 사업자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매체 특성에 따른 운영 적정성
    - 데이터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과 연동된 데이터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임대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평가 점수가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평가대상 제외

- 허가 대상 사업자중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평가실시 제외 명료화 필요
  - 소출력라디오(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기술적으로는 지상파를 이용하지만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방송법 제2조 3호).
  -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허가 대상인 소출력라디오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계유선에 대한 방송 평가 실시 제외 명료화 필요.
  - 현행법령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제외 여부가 불명확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은 허가 대상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한 허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이 추진되어 자연소멸 상태에 있음.
  -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한 평가 제외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다.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는 평가 제외

- 현행 법규상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는 방송평가 대상임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12조에 의해서 승인사업자인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는 방송평가 대상에 해당함
  - 그러나 현재에는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에 대해서 방송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이러한 법률 및 규칙 위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는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인해 승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방송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함
  -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 (T-커머스사업자)
    - 기존 홈쇼핑사업자 5개사: 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 신규 5개 사업자: KT하이텔, 하나로텔레콤, TV버룩시장, 아이디지털쇼핑, 화성산업 등이 2005년 3월에 승인을 받음
  -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을 통한 T-커머스 사업이 매우 부진함.
    - T-커머스를 가장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CJ홈쇼핑과 GS홈쇼핑조차 매출에서 T-커머스의 비중은 1%에 불과함('08년 기준).
    - 5대 홈쇼핑사중 일부는 T-커머스 부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고, 화성산업과 TV버룩시장은 사업 철수를 고려중임
-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의 평가 실익이 거의 없음
  -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을 통한 매출액이 매우 작으므로 규율할 필요성이 약함
  -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주로 기존 5대 홈쇼핑사가 제공하고 있는데,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 사업부서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영역 평가의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하여 승인대상사업자인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PP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라.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에는 방송평가 유예가 필요함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초기 1-2년간은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방송평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규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는 사업 준비기간의 성격이 강하고 편성, 내용, 운영 등 방송평가의 전 영역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평가실효성이 떨어짐
    - 특히 신규 사업자가 연도말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 당해에는 평가할 내용이 별로 없음.
  - 방송법 31조(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해 방송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현행 방송평가규칙 13조(평가대상기간)에서 “방송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법의 규정이 없어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됨.
    -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방송평가 유예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방송평가위원회에게 신규 사업자를 평가유예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중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영업개시 후 1-2년간 평가를 유예한다는 조항을 삽입

### 3.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평가 개선

- 1) 재허가 제도 변화와 방송평가
-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에 따른 평가 개선 필요성
    - 재허가(재승인) 기간이 연장되고, 재허가(승인)에서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비중이 50%에서 40%로 감소함.
      - 2009년 11월에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16조) 개정으로 재허가 기간이 5년간으로 늘어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보도·홈쇼핑 등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2년 연장하되,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 필요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함. 단, 신규사업자의 최초 허가·승인 기간은 3년으로 함.
    -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이들 사업자를 규율하는 강도는 약해짐
      - 재허가(재승인) 기간의 연장으로 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
      - 동시에 특정 연도의 방송평가 결과가 재허가(승인)에 반영되는 비중도 감소함에 따라서 방송평가를 통한 규율도 약해짐.

〈표〉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항목

심사항목	평가지표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계 량	400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계 량	감점
3. 기타 재허가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50점
4.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비계량	150점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비계량	50점
6. 경영의 적정성	비계량	50점
7.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50점
8.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비계량	50점
9. 시청자 권익보호	비계량	75점
10.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비계량	75점
11. 디지털전환 추진실적 및 계획, 경영자의 조직관리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비계량	50점
계		1,000점

※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 요소 포함.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 제5조와 6조를 반영하여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

□ 약해진 규율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송평가 결과에 따른 편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평가 결과에서 상위 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여
- 방송평가 결과에서 하위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 방송평가의 결과가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게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방송평가 자체가 방송사업자의 공익성 제고와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어야 함.

## 2) 재허가 제도와 방송평가의 차별화

□ 방송평가와 재허가(승인) 심사항목과의 완전 차별화는 어려움.

- 방송평가는 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과거 1년간의 방송사업에 대한 평가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재허가/재승인은 행정절차로서 방송사업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방송평가의 결과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방송평가와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차별화를 통해 평가의 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방송평가는 방송의 내용 및 편성영역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허가 심사시에는 운영영역에 평가와 향후 방송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영역별 차별화가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부서간 내부협회가 필요함.

〈표〉 방송평가와 재허가 심사의 차별화

재허가 심사항목	방송평가 개선	차별화 방안
시청자권익보호	내용 및 편성영역 평가 체계화	방송평가에서 중점 평가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 공공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운영영역 평가 항목 축소	재허가 심사에서 중점 평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통위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사례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재허가 심사 항목	현행 재허가 심사 유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통위의 방송평가결과		

- 정성평가중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고려하여 방송평가는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하되 부분적 정성평가 도입.
  - 현행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방송평가에서는 정량평가를 강화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보완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도입하여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V. 평가항목별 개선 방안

### 1. 평가항목 개선 방향

#### 1) 방송평가 항목 간소화

- 평가항목 개선 및 자료 제출 간소화
  - 방송평가의 실익을 고려한 평가항목 간소화 필요.
    - 유사항목 통합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 평가항목의 과다로 인한 평가업무 과중 문제
    - 방송사업자나 평가기관의 업무과중 및 문서의 진실성 검증 제도 미비
  - 대부분의 사업자가 만점을 받아 평가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 개선

#### 2) 방송평가 항목의 타당성 제고

- 올바른 방송의 모습을 측정할 다양하고 내실있는 항목 보완.
  - 공공·공익성 측면에서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책임인 ‘국민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법 제5조 2항)을 직접 평가하는 측정 항목이 없음.

- 방송발전과 공공복리증진 기여 항목(법 제1조)의 평가 여부
  - 문화사업, 사회공헌활동 등 독점적 사업권 보유에 따른 영업이익의 사회환수 노력 평가 포함 여부(운영영역).
- 관련 법규에 의거 의무화된 조항의 평가항목 포함 여부 검토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조항에 대한 평가를 지상파TV외의 방송사업자로 확대 여부

〈표〉 방송평가 항목과 관련 법조항

영역	평가항목	관련 법조항
내용	프로그램 질 평가	품격있는 프로그램제공(법5조1, 법6조7,8)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국민문화의 향상도모(법1조)
	자체심의 운영 실적	공정하고 객관적 방송(법6조1,2,9)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시청자의 권익보호(법1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시청자의 권익보호/참여보장(법3조)
	시청자 위원회 운영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방송의 공적책임(법5조1,3,4,5)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법6조1)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법6조3) 공정성 심의(법32조)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방송프로그램편성(법69조) 편성차별금지(법6조2) 사회교육기능, 문화생활질적향상(법6조7) 의견다양성, 균형있는 편성(법6조9)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	방송의 발전(법1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민족문화창달(법6조6)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소수계층 배려하는 방송(법6조5)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재난방송 실시(법75조)
	직접제작/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SO)	국민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여론형성이바지(법5조2)
	지역방송사자체제작비율(지상파TV)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SO)	지역사회 균형발전/민족문화창달(법6조6)
운영	경영의 적정성	공정한 방송사업 운영(법8조, 18조)
	재무건전성	
	자회사 평가결과활용 적정성	
	인적자원개발투자	
	방송기술투자	
	공정거래준수	
	방송법등 관계법령준수 여부	
	장애인고용	
	여성고용	
	경영투명성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평가 항목 보완

- 방송산업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 개발

- 개인정보보호 중시 추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 필요
- 채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3) 평가항목 간소화를 통한 평가효율성 제고

- 방송 평가 항목 간소화 및 평가효율성 향상
  - 유사항목의 통합 및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를 통한 평가항목 간소화 및 평가항목 체계화
  - 실효성이 떨어지는 평가척도는 폐지하고 정성평가제 도입
    - ‘영역별 평가척도 세부기준’에 의한 정량 평가 항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도입, 양적 측정이 곤란한 평가척도의 실효성 문제 개선.
    - 평가제의 취지는 방송의 질적 제고에 있으므로 방송평가세부기준을 통해 방송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되 구체적 시스템 운영은 방송사별 자율성을 인정하고 평가부담을 최소화.

### 4) 배점기준 명료화로 평가실효성 제고

- 평가영역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체계화해 중복감점 방지 및 제재조치 수준(과태료)에 따른 감점 차등화
  - 내용영역은 내용심의 관련 법규 준수여부로 평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및 ‘협찬고지규칙’ 등 방송 내용 관련 제규정 위반시 감점
    - 폭력·선정 방송, 부적절한 방송언어 남발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법령상 제재의 실효성 강화 필요
      - \* 방송심의 관련 제재건수: 2008년 233건에서 2009년 상반기만 235건으로 증가(광고심 의제외)
  - 편성영역은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준수여부로 평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등 편성 관련 제규정 위반시 감점
    -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여 편성시간량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간소화
  - 운영영역은 방송운영관련 법규 준수여부로 평가
    - 이용약관, 공정거래, 시청자불만 처리 등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따른 감점.
  - 제재조치 수준에 따른 감점 차등화: 주의/경과/사과, 과태료, 과징금 수준에 따른 차등화
    - 방송법 제108조(과태료)에 의한 과태료 처분시 감점 12점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시(예: 시청자불만 처리결과에 따른

- 과징금,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위반시 과징금) 현행 감점기준(20점/15점) 적용
- 음란, 퇴폐, 폭력 등에 관한 심의 규정 위반 및 마약류 관련 심의 규정 위반시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시 현행 감점기준의 150% 적용(30점/22.5점)

〈표〉 방송평가 항목 체계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	비고
내용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규정 위반여부, 자체심의결과 등)	법정편성비율 준수여부 (법정비율 위반여부 등)	운영 관련 법령 준수 (법령위반 여부, 공정거래 준수 등)	영역별 법령준수
시청자주권의 확보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사회기여 프로그램편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재난방송 등)	시청자 권익 보호 (시청자불만, 개인정보보호 등)	영역별 시청자 보호
방송프로그램 우수도 (프로그램질 평가, 수상실적평가 등)	매체특성에 따른 편성 (채널구성, 지역성 구현 등)	방송발전 및 사회적 기여도 (인력, 기술 투자)	영역별 방송발전

-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순환편성, 심야편성 등)의 배점 축소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대부분의 사업자가 만점을 받거나, 단순히 실시여부/편성여부 등만을 평가하는 등 일부 항목의 타당성 부족을 개선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여부는 편성비율만 측정할 뿐 어린이 시청 가능 시간대에 편성되어 실제 편성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평가되지 않음.
  -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시간을 모두 인정하나, 과도한 순환방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방송시간 배점은 각 편성비율에 따른 본방 배점의 50%만 인정함.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등 과도한 순환편성을 지양

## 2.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개선 방향

### 1) 내용영역 평가 항목 개선안

- 내용영역 평가항목 간소화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유사항목의 통합 및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를 통한 평가항목 간소화

〈표〉 내용영역 방송평가 항목 개선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대상
내용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자체심의 운영 실적	지상파TV/R, SO/위성, PP, DMB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지상파TV/R, SO/위성, 보도/ 홈쇼핑PP, DMB
시청자 주권 확보 노력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지상파TV, 보도/홈쇼핑PP
	시청자 위원회	지상파TV, 보도PP, 지상파DMB
프로그램 우수도	프로그램 질 평가 방송사 자체 질평가	지상파TV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지상파TV/R, SO/위성, DMB

(1) 내용심의 관련 규정 준수 평가

- ‘내용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항목은 모든 평가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심의 운영실적’ 과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상파 TV	지상파 R	SO / 위성	보도 PP	홈쇼 핑	DMB		
							지상파 TV	지상파 R	위성
프로그램 내용 심의	자체심의 운영실적	25	50	10	50	50	30	30	20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100	100	60	60	70	70	90	60

- ‘자체심의 운영실적 평가’ 평가 간소화 및 평가방법 개선
  - ‘자체심의 운영실적 평가’ 세부기준 간소화를 통한 규제완화
    - 기존에는 직제상 전담부서 설치여부, 대본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건수 등을 세부적 운영상황을 평가했으나 방송사업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심의 방법에 차이가 나 평가척도의 현실성 부족.
    - 자체심의 부실에 따른 심의규정 위반시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항목을 통해 평가에 반영 가능함을 고려하여 평가척도 간소화
  - 자체심의 운영 실적은 직제상 자체심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및 자체심의 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로 단순화(세부 평가척도 5개 → 3개)
    - 자체심의 운영실적 평가의 경우 ‘직제상 심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등 심의시스템 구축여부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를 유지하되, 대본심의비율, 심의시기, 월평균 1인당 심의건수 등의 항목은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의운영결과보

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자체심의 운영결과보고서를 통해 심의제도 운영의 적정성, 결과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이를 통해 방송사의 특성에 맞는 자체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며, 부실심의에 따른 시청자 피해 발생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통해 평가에 반영.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 내용심의 관련 법규 준수여부 평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및 ‘협찬고지규칙’ 등 방송 내용 관련 제규정 위반시 감점(감점 기준은 기존 방송평가규칙의 척도를 적용)
-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정도의 차이에 따른 차등 감점 유지.
  -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방송시장의 경쟁 격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저질화를 방지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유도.

(2) 시청자 주권의 확보

□ 시청자주권확보 노력은 기존 규칙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과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상파TV	보도 PP	홈쇼핑	DMB
					지상파TV
시청자주권확보 노력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25	40	20	
	시청자 위원회	25	40		20

□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간소화

- 평가대상의 경우 기존의 지상파TV, 보도PP에 홈쇼핑PP를 추가하고 기존 배점을 강화하여 방송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
- 시청자주권확보 노력 세부평가 항목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종합 평가’와 ‘시청자위원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기존 규칙과 같이 정량평가를,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방송법 제89조에 의거, 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사업의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평가의 경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내용평가와 편성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를 유지함.
  -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경우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기존 평가규칙과 같이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은 운영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함.

- 홈쇼핑PP의 경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여부 및 편성' 평가는 시간량으로 평가(20점)
  - 홈쇼핑 채널의 경우 방송법에서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방송평가에서는 자율적인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을 평가척도에 포함하도록 개선함.
  - 배점기준은 편성시간량에 따른 5등급 평가: 월간 단위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60분 이상 편성시 20점, 40분 이상 60분 미만 편성시 15점, 20분 이상 40분 미만 편성시 10점, 20분 미만 편성시 5점, 미편성시 0점
  - 홈쇼핑PP에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이 새벽이나 심야시간대에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02:00~06:00)에 편성되는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실적을 50%만 인정.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항목은 운영영역에서 평가.

- 기존 방송평가규칙에서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은 내용영역에서 평가하였으나 이를 운영영역에서 평가하도록 변경함.

평가항목	평가척도	
	개선 전	개선 후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위원회 불만처리결과 전담부서, 야간 민원시스템, 시청자불만 처리율, 피드백시스템	운영영역으로 변경

- 방송 내용 관련 불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시청자 불만과 차별화되는 상황을 반영.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 17호)에서 불만처리의 대상은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으며,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주요 처리대상임을 반영.

\*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불만처리의 대상) ①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단,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법 제64조에 의한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4.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3) 프로그램 우수도 평가

- '프로그램 우수도' 항목 평가는 'KI 프로그램 질 평가', '방송사 자체 질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등 세부항목으로 평가.

- 자체편성 비율이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TV 사업자의 경우 위 3가지 항목으로 평가 하되, 지역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SO/위성, DMB 사업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만으로 평가.
- 'KI 수용자 평가 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질 평가'는 현행 유지(70점)
- '방송사의 자체 질 평가'를 추가 신설(30점)
-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 점					
		지상파 TV	지상파 R	SO· / 위성	DMB		
					지상파TV	지상파R	위성
프로그램 우수도	프로그램 질 평가	70					
	방송사 자체 질평가	30					
	프로그램 관련 수상 실적	25	30	10	20	20	20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배점 조정 및 평가기준 명료화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은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라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나 자체제작 50% 미만인 방송사업자(지역 지상파TV)의 경우 수중계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상실적 보다는 중앙 방송사의 수상실적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평가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배점을 하향 조정(지상파TV의 경우).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은 방송프로그램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평가를 유지하되 평가기준을 명료화.
  - 수상실적 평가기준 및 수상실적 인정범위를 둘러싼 평가기관과 피평가자간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해외 수상실적의 경우 기존 세부기준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외 우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로만 정의되어 있어 수상실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평가업무가 가중됨.
  - 해외 시상제도의 경우 주최기관, 지속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 시상제도의 경우는 5점을 부여하고,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주최기관의 저명도가 떨어지고, 참여 기관이 적은 시상제도의 경우는 국내 시상제도에 준하는 2점 부과.
  - 개인상 부문의 경우 제작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나 제작부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존재함.
  - 개인상 부문은 프로듀서, 촬영, 음향, 미술, 조명, 편집(영상제작), 영상그래픽, 기술, 작가, 보도기자, 스포츠제작보도, 카메라기자 등 출연자 이외의 제작부문 수상에 한정함을 명기.
- 기타 수상실적 세부기준 및 척도는 현행 방송평가규칙의 내용을 유지

2) 편성영역 평가 항목 개선안

- 편성영역 평가항목 간소화 및 평가척고 개선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유사항목의 통합 및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를 통한 평가항목 간소화

〈표〉 편성영역 방송평가 항목 개선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대상
법정 편성비율 준수	편성관련 법정비율 준수여부	지상파TV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지상파TV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	지상파TV, SO/위성, 보도/홈쇼핑PP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지상파TV/R, 보도PP, 홈쇼핑, DMB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지상파TV, SO/위성, 홈쇼핑
매체별 특성에 따른 편성 (매체별 평가항목 차별화)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지상파TV
	자체제작 비율	지역지상파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	SO
	채널구성 및 운영다양성 - 직접제작/외주제작 - 지역채널 액세스프로그램	SO/위성 SO

(1) 법정 편성비율 준수 평가

- 법정 편성 비율 준수 여부는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준수여부로 평가(지상파)
  - 방송법 및 시행령 규정에 포함된 편성관련 의무 사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등 편성 관련 고시 위반시 감점
    -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전체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 등 기존 평가규칙상의 평가척도를 포함하여 법정 프로그램 편성비율 미준수시 감점
    -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방송편성 관련 과태료 부과시 감점
  - 위반 여부만을 평가에 반영하여 편성시간량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간소화
    - 방송법령상 의무사항으로 기존 평가에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준수해왔으므로 배점도 기존 60점에서 50점으로 축소하고, 평가절차도 간소화하여 편의성 제고.

(2)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장애인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공익성프로그램 편성’ 등으로 평가.

〈표〉 사회기여프로그램 평가 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대상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프로그램 편성비율	지상파TV
	○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지상파TV, SO/위성, 승인PP
	○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지상파TV, 라디오, 승인PP
	○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지상파TV, 홈쇼핑PP, SO/위성

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지상파TV)

-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EBS와 케이블TV를 통한 시청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항목 배점을 60점에서 50점으로 완화하되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2007년, 2008년, 2009년 평가결과, 두 항목 모두 만점을 받은 EBS를 제외한 대다수 방송사들의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평가척도별로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점수가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점수 보다 낮게 나타남.

〈표〉 지상파 TV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	채널별 평가점수			
		2007년	2008년	2009년
어린이프로그램 편성 (60)	KBS-1	45.0점	48.75점	37.5점
	KBS-2	41.25점	52.5점	52.5점
	MBC	33.75점	30.0점	37.5점
	SBS	26.25점	41.25점	26.25점
	EBS	60.0점	60.0점	60점
	지역 민방(평균)	32.08점	33.75점	28.13점
평가척도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현행과 같이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각각 9등급으로 평가하되, 프로그램 시청등급과 편성시간을 연동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평가기준을 강화함.
-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나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 제 2조 4항이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는 바 어린이프로그램의 인정범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해당 방송등급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의 시청이 어려운 심야시간대(22시부터 06시까지)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음.

## ②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 장애인의 텔레비전 시청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방송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방송 종류별 배점 조정(자막방송의 만점 기준 상향 조정)
  - 유료방송사업자인 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평가에 포함(30점)
  - 보도 및 홈쇼핑 등 승인 PP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평가에 포함(각 20점).
- 지상파TV의 경우 2007년, 2008년, 2009년 평가결과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점수가 향상되는 추세이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2009년 방송평가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막방송 편성비율'(24점)의 경우 KBS1, MBC, SBS, EBS 및 9개 지역민방은 만점을 받았으나 경인TV(OBS)의 경우 15.15%로 3점에 불과함.
  - '수화방송 편성비율'의 경우 KBS1만 만점을 받았을 뿐 대다수의 다른 방송사들은 낮은 점수를 받음. 특히 KBS-2TV(1.21%), OBS(0.62%), EBS(0%) 등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KBS-1, KBS-2, MBC, SBS 등이 만점을 받았으며, 지역민방의 경우에도 KBC광주방송(1.83%, 4.5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음. 다만 OBS(0%)는 편성실적이 전무했으며, EBS의 경우 2007년과 2008년 모두 화면해설방송 편성 실적이 전무했으나 2009년에는 1.8%(4.5점)로 향상됨.

〈표〉 지상파 TV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	채널별 평가점수			
		2007년	2008년	2009년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편성 (60)	KBS-1	52.5점	58.5점	60점
	KBS-2	33점	42점	42점
	MBC	45점	45점	54점
	SBS	45점	51점	51점
	EBS	42점	30점	28.5점
	지역 민방(평균)	42.17점	52.5점	48.3점
평가척도	- 자막방송 편성비율(24점): 5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수화방송 편성비율(24점):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12점):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KBS 각 지역총국 및 각 지역MBC의 평가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표〉 2009년 지상파 TV의 장애인 프로그램 분야별 편성평가 결과

채널	자막방송(24)		수화방송(24)		화면해설방송(12)		평가점수 (60)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KBS1	85.3	24	8.1	24	5.1	12	60
KBS2	96.33	24	1.21	6	6.5	12	42
MBC	96.1	24	3.7	18	5.9	12	54
SBS	85.8	24	3.3	15	5.7	12	51
9개지역(평균)	69.8	24	3.88	18.3	5.11	10.7	53
OBS	15.15	3	0.62	3	-	0	6
EBS	74.6	24	-	0	1.8	4.5	28.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0). '2009년 방송평가 편람'에서 재구성.

□ 장애인 방송 평가 배점조정(지상파TV)

- 현행과 같이 장애인방송의 종류를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으로 구분하되 장애인방송 평가항목의 총점 60점에 대한 세부배점을 조정.
  - 자막방송 평가점수를 24점으로, 수화방송은 12점, 화면해설방송은 24점으로 배점 조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문제를 개선.
- 현행과 같이 자막방송 편성비율, 수화방송 편성비율,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을 각각 9등급으로 평가하되, 일부 세부항목의 만점 기준치를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항목 중 '자막방송 편성비율의 만점 기준치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
  - 2009년 방송평가 결과 KBS-1TV(85.3%), KBS-2TV(96.33%), MBC(96.1%), SBS(85.8%)의 자막방송 편성비율이 90% 내외이고, 지역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수중

계 비율이 최소 67% 이상임을 감안함.

- 다만 수중계 없이 100% 자체편성을 하는 독립지역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 편성비율 현행대로 50%를 만점으로 유지하며,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각각 2.5%를 만점으로 하향 조정.

□ 장애인 방송 평가 배점 추가(SO/위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 여부를 평가(총 배점 30점)에 포함하여 '재전송시 장애인방송 신호 누실여부'(10점), '자체채널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10점),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확대 계획의 적절성'으로 평가(10점)
  - 대다수의 시청자가 케이블SO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재전송시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을 누실하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여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의 누실이 없을 경우 10점 만점, 누실하는 경우 0점 부여
  - 자체채널을 통해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 중 1개 이상의 장애인방송을 주당 30분 이상 편성할 경우 10점 만점, 편성하지 않는 경우 0점 부여.
  -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확대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에 포함(10점)

□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 배점 추가(승인PP)

- 승인대상인 보도, 토크쇼, 종합편성 방송사는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 중 1개 이상의 장애인방송을 주당 1시간 이상 편성할 경우 20점 부여, 주당 30분 이상 1시간 미만 편성할 경우 15점, 주당 30 미만 편성시 10점, 미편성시 0점 부여.

③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지상파TV/R, 보도PP, 토크쇼, DMB)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해재난의 발생빈도와 각 재난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방송 평가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난의 국지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지역별로 재난방송 편성 실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행 매체별 최고점을 기준으로 재난방송평가실적을 상대평가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평가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재난방송편성 및 실시 항목의 경우 상대평가로 인한 평가불만을 고려하여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위주로 평가를 개선하고, 세부척도에서 '재난방송운영실적' 배점을 완화(지상파TV/R의 경우 현행 20점을 10점으로 하향)

〈표〉 재난방송 평가 척도 개선안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 위성	PP (보도)	PP (홈쇼핑)
		50점	70점	-	40점	10점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 재난방송의 편성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10점	10점	-	10점	5점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20점	20점	-	10점	-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 자체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 (매뉴얼 마련시 만점 / 없는 경우 0점)	5점	10점	-	5점	5점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및 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 (관련 인력 운영시 만점 / 미운영시 0점)	5점	10점	-	5점	-
	- 재난방송 대응시스템 구축여부 (시스템 구축시 만점 / 미구축시 0점)	5점	10점	-	5점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5점	10점	-	5점	-

④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지상파TV, 홈쇼핑PP, SO/위성)

- 방송의 공익·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의 경우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에 관련된 평가항목 신설하고 ‘국민화합관련 공익프로그램 편성량’(15점)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량’으로 평가(15점)하며, 홈쇼핑PP는 기존 평가규칙의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의 비상업적 프로그램 편성량으로 평가(30점).
- 일부 법규상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의무 평가 항목 부재
  - 양극화, 다문화 등의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화합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평가에 포함할 필요성 대두.
    - 사업자 의견수렴에서도 프로그램 편성에서 소수계층 프로그램편성을 포함하지는 의견이 제기됨.
  - 지상파TV의 경우 양극화, 다문화 등 사회 현실을 고려한 ‘국민 화합관련 공익프로그램\*’의 특별 편성 관련 항목 평가를 추가
    - 국민화합관련 공익프로그램은 민족동질성 확보,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의 갈등을 치유하는데 기여하는 교양 프로그램
    - 배점기준: 특별편성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15점)

〈표〉 국민화합 공익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

주당 편성시간	배점
150분 이상	15점
120분 이상~150분 미만	12점
90분 이상~120분 미만	9점
60분 이상~90분 미만	6점
30분 이상~60분 미만	3점
30분 미만	0점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되, KBS를 제외하고는 방송법에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배점을 차등화함.
  - KBS는 방송법 제69조 7항에 의무편성 규정이 있고, SO와 위성방송은 시청자가 원할 경우 편성해야 할 의무(제70조 7항)이 있음에도 기타 지상파(MBC, SBS, 지역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회 등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음
  - KBS는 방송법 제69조7항 및 시행령 51조 2에 따라 월 100분 이상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량을 편성할 경우 만점부여.
  - KBS를 제외한 지상파TV는 월 60분 이상 편성할 경우 만점을 부여하되 이 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가 부여

〈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

KBS	기타 지상파TV	배점
월 120분 이상	월 60분 이상	15점
100분 이상~120분 미만	50분 이상~60분 미만	12점
80분 이상~100분 미만	40분 이상~50분 미만	9점
60분 이상~80분 미만	30분 이상~40분 미만	6점
50분 이상~60분 미만	20분 이상~30분 미만	3점
50분 미만	20분 미만	0점

□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홈쇼핑)

- 홈쇼핑PP의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항목 평가 (배점 30점)
- ‘공익성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익의 공익적 환원을 목적으로, 방송시간 자체를 기부하는 프로그램 행태로 정의할 수 있음.
  - 홈쇼핑PP에서 사회기여 프로그램의 유형은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비수익적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소비자 교육’ 등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상품판매나 광고 등의 요소가 없는 프로그램에 한정함.
  - 배점기준은 현행과 같이 편성시간량에 따른 5등급 평가하되 만점기준을 상향조정함: 월간 단위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120분 이상 편성시 30점, 90분 이상 120분 미만 편성시 22.5점, 60분 이상 90분 미만 편성시 15점, 30분 이상 60분 미만 편성시 7.5점, 미 편성시 0점
- 홈쇼핑PP에서 사회기여프로그램이 새벽이나 심야시간대에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02:00~06:00)에 편성되는 사회기여 프로그램의 경우 실적을 50%만 인정.
- 최근 3년간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평가에서 모든 사업자가 만점을 받아 평가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홈쇼핑의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평가 결과

평가항목	채널명	채널별 평가점수		
		2007년	2008년	2009년
공익성구현 프로그램 편성 (20)	GS홈쇼핑	15.00	20.00	20.00
	CJ홈쇼핑	17.50	20.00	20.00
	현대홈쇼핑	20.00	20.00	20.00
	농수산홈쇼핑	20.00	20.00	20.00
	우리홈쇼핑	15.00	20.00	20.00
평가척도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여부 및 편성 현황 (10점)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현황 (10점)			

출처: 방송위원회(2008). '2007년 방송평가 편람' 및 방송통신위원회(2009). '2008년 방송평가 편람', 방송통신위원회(2010) '2009년 방송평가 편람'에서 재구성.

□ 공익성 채널 편성(SO/위성)

- SO와 위성방송의 '공익성 채널 편성' 항목 평가를 도입하여 유료방송의 공익성 제고(배점 30점)
- 공익성 채널 편성 평가는 SO/위성의 공익채널 편성 현황으로 평가
  - 현행 유료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의무편성 채널 제도 시행. 현행 의무편성 분야는 지상파재전송 채널 및 승인 보도채널 외에 공공(3개), 종교(3개), 공익(3개)채널이며, 이중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의 분야임.
  - 법정 의무 공익채널 수만 편성시 10점, 1개-3개 채널 추가 편성시 20점, 4-6개 채널 추가시 30점 부여.

(3) 매체별 특성에 따른 편성 평가

- 각 매체별, 사업자별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매체별 특성에 따른 편성' 항목으로 통합 평가

<표> 매체별 특성에 따른 편성 평가안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대상
매체별 특성에 따른 편성	○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 오락편성 비율 60% 미만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자체편성 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방송사업자)	지상파TV
	○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KBS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중 자체편성비율이 50% 미만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지상파TV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SO
	○ 채널구성 및 운영 다양성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실적 - 지역채널의 액세스프로그램 편성시간량 및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SO)	케이블SO, 위성방송

①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지상파TV)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여부를 9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
  - '주시청시간대'라 함은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3항에 의거, 평일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함.

②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지역 지상파TV)

- KBS 지역총국, 지역 MBC, 지역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방송사(총국)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량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
- 각 지역 지상파방송사에는 그 법적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부여하며 이 비율을 달성할 경우 만점을, 이 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9등급으로 나누어 점수가 부여
  - KBS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2007년, 2008년, 2009년 평가결과 일부 지역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방송사가 자체제작비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민방의 경우 제주방송을 제외하면 모두 만점을 받아 향후 만점 기준치를 상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지상파 TV의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 평가 결과

평가항목	채널별 평가점수 (평균)			
		2007년	2008년	2009년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60)	KBS지역총국	6.8% (31.92점)	7.43% (44.57점)	7.83% (43.75점)
	지역 MBC	14.55% (53.29점)	14.87% (59.47점)	14.53% (57.24점)
	지역 민방	24.5% (57.5점)	25.11% (58.33점)	25.14% (58.33점)
평가척도	※ 평가대상: KBS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 편성 방송사업자 제외) - KBS 지역총국: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MBC: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민방: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출처: 방송위원회(2008). '2007년 방송평가 편람' 및 방송통신위원회(2009). '2008년 방송평가 편람', 방송통신위원회(2010). '2009년 방송평가 편람'에서 재구성.

③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SO)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을 9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을 모두 인정하나 과도한 순환방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방송시간 배점은 각 편성비율에 따른 본방 배점의 50%만 인정함.
- 지역성구현 프로그램의 정의를 명료하게 제시하여 평가혼란을 방지.
  - 지역성구현 프로그램의 인정범위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SO사업권역 내와 해당 사업권역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접 시군구로 한정.
  -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SO사업권역이 속한 구 및 해당 구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접구 및 인접시군, 기타 지역의 경우 해당 SO의 사업권역이 속한 시군구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접 시군구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만 인정함.
  - MSO의 경우 해당 지역관련 프로그램만 분리하여 평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인정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범위를 2, 3, 5호의 기준에 한정함.
  - 방송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1호에 해당하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액세스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제외하며, 4호의 방송프로그램 안내는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제외함.
  - 단, 방송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5호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의 본래 취지를 살려 SO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형식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한정함. 단, 지역사회 또는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당해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보도 프로그램,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각종 지역행사의 증계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오락프로그램을 포함.

※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 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④ 채널구성 및 운영 다양성(SO/위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채널 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9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존 규칙의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시간을 모두 인정하나, 과도한 순환방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방송시간 배점은 각 편성비율에 따른 본방 배점의 50%만 인정함.
-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는 편성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되, 직접사용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15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시간량 및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을 포함하여 평가함(15점).
  -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액세스프로그램의 편성시간량 및 액세스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을 현행과 같은 기준에 의거 평가함.
  - 단,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는 액세스프로그램 참여 안내 방송(자막 고지 포함), 시청유도를 위한 안내 방송 등 방송을 통한 실적만 인정.

### 3) 운영영역 평가 항목 개선안

- 운영영역에서는 평가 항목을 대폭 간소화함
  - '경영의 적정성', '경영 투명성', '자회사 평가', '여성 고용' 항목은 삭제함.
  - '재무 건전성' 항목은 평가 척도를 대폭 간소화함
  - '인적자원개발 투자', '방송기술 투자' 및 '장애인 고용' 항목을 '인프라 개선 및 사회적 기여도' 항목으로 통합함
  - '공정거래준수'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항목을 '관련 법령 준수'로 통합함
  - 내용영역에 있던 '시청자불만 처리 적절성' 항목을 운영 영역을 옮겨서 '시청자 권익 보호' 항목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시청자 불만 처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항목 신설(홈쇼핑, SO, 위성사업자)
    - 다량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홈쇼핑PP, SO,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항목을 신설
    - 정보보호시스템 수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내부), 유출여부 등을 종합 평가
  - 매체특성에 따른 운영 적정성에서 홈쇼핑 채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
    - 홈쇼핑 채널에 납품하는 업체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서 '판매수수료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함

〈표〉 운영영역 방송평가 항목 개선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	8개 척도를 3개로 간소화
인프라 개선 및 사회적 기여도	인적자원	기존 3개 평가 항목 통합, '사회적 기여도' 신설
	기술개발 투자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 준수	공정거래 준수	2개 평가 항목을 통합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시청자불만 처리 적절성	'개인정보 보호 적절성' 항목 신설
	개인정보 보호 적절성	
매체특성에 따른 운영적정성	수신료배분/채널공급계약(SO, 위성)	'판매수수료 등의 적정성' 신설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홈쇼핑)	
	판매수수료 등의 적정성(홈쇼핑)	
	경영의 적정성	4개 평가 항목 삭제
	경영투명성	
	자회사 평가	
	여성고용	

(1) '경영의 적정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자회사(계열사)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 항목은 삭제함

- 방송사업자들이 경쟁의 증가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취지의 항목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음
- 방송평가항목과 재허가 심사 항목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므로 중복항목 일부 항목의 삭제를 통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차별화 함
  - 재허가(재승인)에서 심사 내용과 방송 평가에서 심사 내용의 중복이 심하므로 이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일부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함<sup>1)</sup>
  - 재허가(재승인)의 경우 과거 실적에 기반을 둔 미래의 예측치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방송평가에서는 과거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므로 실질적으로 중복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음
  - '재무 건정성' 항목의 삭제를 검토하였지만, 방송 평가에서 과거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음
- 삭제한 항목의 특성 : 연단위 평가의 의미가 작은 항목, 방송시장에서 경쟁의 증가로 인해서 개별 방송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적고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함에 따라서 매년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된 항목
- '경영의 적정성' 평가의 척도는 현재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여부',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및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

1) 대안으로는 재허가 심시시에는 향후 계획만을 평가하고, 방송평가에서는 기존 허가 기간의 실적을 평가함

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방송사의 합리적 예산 관리 절차를 평가하는 것은 방송사가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시점에 적절한 평가 항목임
- 지금은 전체적으로 방송사의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예산 편성 절차의 합리성을 평가할 필요는 약해졌음
-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항목은 6개의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척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항목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이용하고 있는 6개의 평가 척도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사외이사 운영현황, 소액주주 보호장치,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채널의 경우 1인이 전체 지분의 40%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서 이사회내에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경영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M&A를 거쳐 대형화되면서 경영이 투명해지고 있으며, 일부 1개 또는 2개의 SO를 소유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영이 투명하지 않을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1개 또는 2개를 소유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이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방송평가에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
  - 홈쇼핑채널은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적음
  - 감사인, 사외이사 등에 대한 감시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시에 심사하고 있으므로 중복됨
-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에서는 자회사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하는지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음
  - 이때 평가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애매함 : 자회사가 방송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자회사를 잘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와 방송 평가의 목적인 방송의 공공성과 품격을 제고와 연관성이 적음
-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를 평가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점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 항목을 폐지함에 따라 반영할 필요성이 없어짐
  - 현재 평가 척도에 의하면, 내부 감사가 외부감사위원회에 비해 배점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에 비하여 독립성 및 공정성이 강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임. 따라서 외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내부 감사와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평가 척도에는 정관에 집중투표청구권을 도입 여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출발하였으나 실제 운영 결과 적대적인 M&A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대다수의 상장사들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성이 중시되는 방송사업자의 평가항목으로 집중투표청구권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평가 척도에는 세무조치 적출 사항과 사후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세무조사후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추정금이 부과되

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세무조사의 경우 5년 주기로 특정 사업자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바, 세무조사 해당 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평가 결과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 방송평가가 매년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 조사 적출사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사후 조치 내용에 대한 평가 척도는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사외이상항목의 경우 사외이사 유지에 따른 비용부담이 큼. 차라리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좋음

(2) '재무의 건전성'에서는 평가척도를 현재의 8개의 평가척도를 3개 평가척도로 간소화함

- 방송사업자의 성장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하는 척도를 한 개씩만 선정하여 평가함
  - 성장성 척도로는 매출액 증가율을, 안정성 척도로는 부채비율을, 수익성 척도로는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이용
  -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에 대해 5등급 평가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자료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들이 '재무의 건전성' 항목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과거 8개의 평가 척도를 이용할 때의 평가 척도의 구성
  -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8개 재무비율에 대해 5등급 평가

(3) 공정거래준수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운영 관련 법령 준수'로 통합

- 이전 두 항목에서의 평가 척도중 일부를 개선하여 통합
  - '공정거래 준수'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
  - '공정거래 준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함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의 경우 위반 건수에 따라 감점 방식으로 평가
-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척도를 폐지함.
  - 이 척도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준수 강제하는 수단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 이를 대체하여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함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등급 평가를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자율 준수 여부를 8단계로 세분화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 반영시 공정위 제재조치 사항도 이미 포함하고 있음
- 일부 사업자는 평가 척도중 '공정거래 위원회 제재조치 사항' 및 '방송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조치 사항'은 다른 평가 항목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흡쇼핑 사업자의 공정위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은 표시광고 위반인데, 이는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항목을 통해서 평가되고 있으므로 중복됨.
  - 따라서 공정위 제재조치 사항중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와 동일사안인 경우 둘 중 한

곳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4)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을 '시청자 권익 보호'로 변경

- 내용영역에 있던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을 운영영역으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성'을 평가척도에 추가하면서 평가항목의 이름을 '시청자 권익 보호'로 변경함.
  - 시청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은 대부분 방송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영역으로 이동함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함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의 경우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여부/전담부서운영/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를 평가함
  -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성'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업무로 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지, 이들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호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의 평가척도에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를 전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방송사업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조치를 요청한 내용중에는 방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건도 있으므로 이를 건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정보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부응하여 방송사업자들이 개인의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과 조치를 하고 있는 평가에 반영함
  - 개인 정보 보호를 업무로 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지, 이들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호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

(5) '인적자원 개발', '방송기술 투자' 및 '장애인 고용'을 '인프라 개선 및 사회적 기여'로 통합

- 과거 세 항목에서의 평가 척도를 모두 수용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척도에 추가함
  - '인적자원 개발'과 '방송기술 투자'의 배정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기여도'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함
  - '인적자원 개발'의 경우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1인당 교육비', '직무와 연관있는 교육에 대한 평가'를 5개 구간 또는 5점으로 평가함
  - '방송기술 투자'의 경우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와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를 각각 6등급 및 8등급 평가
  - '장애인 고용'의 경우 평균 종업원수에 대한 장애인 종업원수의 비율을 10구간으로 평가
  - '사회적 기여도'의 경우 사회적 기여(기부금, 공익재단 설립, 공익 캠페인),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홍보(무료 제공 포함)을 평가
- 방송 기술 투자의 경우 사업자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음
  - 위성DMB 사업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 위성체의 발사와 캡필러의 설치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후에는 셋탑박스의 보완 등과 같이 초기 투자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을 투자함. 현재의 방송 기술 투자의 평가 척도는 위성DMB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사업의 특성상 기술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디지털방송과 HD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정도의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 따라서 전체 매출액에 비해서 기술 투자의 금액이 매우 적으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이러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음. 위성DMB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 투자액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포함을 검토하였으나, 감가상각 방식이 정액제와 정률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균형성 있는 지표가 아님.
- 장애인 고용 항목의 현행 유지
  -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2005. 12. 30)에 의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 중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받게 됨.
  - 장애인 고용 항목은 1-2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또는 퇴사할 경우에 만점을 받을 수도 있고 0점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안정적인 평가항목이 되지 못한다는 사업자의 지적을 받아 왔음
  -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평가 항목에 장애인 고용 항목이 있더라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므로 이 평가 항목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고, 방송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 평가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함
  -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 종업원을 주로 콜센터에서 고용하고 있다. 콜센터를 100% 출자 자회사로 분리하여 경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콜센터의 인력을 홈쇼핑 인력으로 포함하여 평가해 주기 바람
-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추가함
  - 방송사의 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시 사회적 기여(기부금, 공익재단 설립, 또는 공익 캠페인)를 하기로 한 경우,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척도를 추가함 → 이 경우 평가척도는 이행 여부 및 기부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
  - 방송사들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송 인력의 교육을 위해서 기여를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함 → 이 경우 평가척도는 '피교육 인력수 × 교육 시간' 임
  - 방송사들이 한국과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방송사 또는 교육기관 등)에 무료로 프로그램(또는 도서)을 제공한 실적을 평가 척도에 추가함 → 이 경우 평가척도는 무료로 제공한 프로그램의 수
  - 지역 지상파 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 척도에 추가함
    - 새로운 척도를 추가하여 방송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을 공익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를 유도함
  - 방송발전을 위한 투자에 '제작비 지출'을 척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평가 척도에 포함하지 않음

- 방송사별로 통일된 기준으로 제작비 지출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예를 들면 방송사의 직원중 제작 부서 직원의 인건비 포함 여부가 방송사별로 다르고, 제작시 이용되는 스튜디오, 기자재, 차량 등의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움.

#### (6) 여성 고용 항목 삭제

- 평가방법에서 여성 고용비율은 지상파(TV/R)와 그 외 사업자의 2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 각 매체별 상이한 직종 구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현실적으로도 현재 방송사는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여성 고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여성 고용 항목의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짐
  -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100% 출자 자회사로 분리하여 경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콜센터의 인력을 홈쇼핑 인력으로 포함하여 평가해 주기 바람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성고용비율보다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대한 평가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강남준 외, 2008), 전체적으로 방송 평가를 간소화하려는 이번 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반영하지 않음

#### (7) '판매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신설

- 홈쇼핑 채널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홈쇼핑 채널은 판매수수료를 '07년 32.9%, '08년 34.0%로 1.1% p 증가(중소기업 제품은 35.7%) 부과
    - 패션·의료, 이·미용품, 건강식품 35~40%, 일반식품 10~35%, 대형가전 10~20%
  - 정액 판매수수료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서 주로 사용(50분 방송에 최소 1,900~5,800만원 부담)
  -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비용(모델비, 세트제작비, 사은품, 배송료, ARS비용 등)을 부담하므로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인식<sup>2)</sup>
-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 척도로 활용
  - 서면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방통위에서 자체 서면 조사
  - 서면조사 내용 :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정액수수료 방송 여부 및 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의 책임 전가 등

2)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백화점 및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마련, 2010. 5. 31 배포)

- (8)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함
-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의 경우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함
  - 홈쇼핑사업자의 평가 항목이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의 평가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농어민 공급 상품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편성비중)'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편성비중 평가)'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배려 기준 및 준수 여부(편성비중 평가)'에서 정량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육성 활동(예 : 완전 매입 실적, 판로확대, 자금 지원, 품질 지원 등)을 정성평가해 주기를 원함
  - '농어민 공급 상품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의 삭제를 요구한 이유는 홈 쇼핑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 '중소기업 배려 기준 및 준수 여부'의 경우 정성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정량만을 지속함

4) 항목별 배점표 개정안

평가 영역	수정안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존 배점 지상파TV	지상파TV (600)	지상파R (250)	SO·/ 위성 (200)	보도 PP (250)	홈쇼핑 (200)	DMB		
									지상파 TV	지상파 R	위성
내용 영역	소계		300	300	180	80	190	140	140	140	100
	프로그램질적 향상	프로그램 질 평가 + 방송사 자체 질평가	70	100△							
		프로그램 관련 수상 실적	30	25▽	30	10			20	20	20
	프로그램 내용 심의	자체심의 운영실적	30	25▽	50	10	50	50	30	30	20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100	100	100	60	60	70	70	90	60
	시청자주권확 보노력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20	25△			40	20△			
		시청자 위원회	20	25△			40		20		
	운영영역이동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30	0							
	편성 영역	소계			300	70	120	60	60	110	110
법정편성비율 준수		편성 관련 고시위반	60	50							
사회기여 프로 그램 편성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60	50▽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편성	60	60		30△	20△	20△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60	50▽	70		40	10	50	50	40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0	30△		30△		30			
매체별특성에 따른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지상파-TV)	60	60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지 역지상파-TV)	60	60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 (SO)	40			30					
		직접제작·외주프로그램 편 성(SO/위성)	30			30					
		DMB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DMB)	(40)						60	60	60

평가 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존 배점 지상파TV	지상파 TV	지상파 R	SO·/ 위성	보도 PP	홈쇼핑	DMB			
									지상파 TV	지상 파 R	위성	
운영영 역		소계	300	300	250	300	250	300			300	
	삭제	경영의 적정성	40									
		경영투명성 확보 시스템 운영	30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 적정성	30									
		여성 고용	20									
	재무건전성	매출액 증가율		25	20	20	20	20			20	
		부채 비율	40	25	25	25	25	20			25	
		매출액 영업 이익율		30	25	25	25	20			25	
	방송인프라 개선 및 사회적 기여도	인적자원 개발 투자	30	25	20	20	20	20			20	
		방송기술 투자	30	20	20	20	20	15			20	
		장애인 고용	20	15	15	15	15	15			15	
		사회적 기여도	0	20	15	15	15	10			15	
	관련법령준수	공정거래 준수	30	40	35	35	35	30			35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30	40	35	35	35	30			35	
	시청자권익보호	시청자불만처리 적절성	30	30	20	25	20	15			25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0	30	20	25	20	15			25	
	매체특성에 따른 운 영적정성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25					25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25					25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40				
		판매수수료 등의 적정성						50				

